제323회 남양주시의회(제1차 정례회)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
남양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6. 10. 30.

기획행정위원회
전 문 위 원

남양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안경과

○ 본 조례안은 2026년 10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

2. 제안이유

○ 갑질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 또는 노무사를 통한 대리 신고의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○ 전문가 대리신고 조항 신설(안 제6조제3항)

- 신고자는 신분 노출 없이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를 통해 대리신고 가능

  * 대리인이 기명신고 접수 후 대리인 명의로 신고

  * 대리신고 안심 변호사·노무사 운영 및 예산편성(자문수당) 예정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1

나. 예산조치 : 붙임2 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)

다. 관련부서 : 감사관

라. 입법예고 : 2026. 8. 20. ~ 9. 9. (20일간) / 의견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안은 갑질 신고 시 신분 노출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하는 직원이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를 통해 대리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, 신고자의 익명성과 신분 보호를 강화하고 갑질 신고를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○ 특히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제8조의2와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8조의2에서도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두고 있는 만큼, 본 개정안은 이와 유사한 신고자 보호 방식을 갑질 신고에 도입하여 신고 과정에서 신분이 노출될 우려를 줄이고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

○ 다만, 대리신고의 접수·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원과 신고 내용이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 유지 절차를 마련하는 등 세부 운영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.

○ 또한 대리신고 안심 변호사·노무사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수당 지급 기준을 적정하게 마련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붙임1 관계법령

☑ 「지방자치법」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☑ 「지방공무원법」

제52조(비밀 엄수의 의무)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.

☑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58조의2(비실명 대리신고) ① 제58조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58조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기명의 문서는 변호사의 인적사항 및 변호사 이름의 문서로 갈음한다.

☑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

제8조의2(비실명 대리신고) ①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.

붙임2 **예산조치**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 수반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자치법규안명

○ 남양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

나. 재정 수반 요인

○ 조례 개정안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가(변호사, 노무사)에 의한 대리 신고 제도를 운영할 경우 전문가 자문료가 발생할 수 있음

2. 미 첨부 근거 규정

- 「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1호

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 첨부 사유

- 갑질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 또는 노무사를 통한 대리 신고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대리신고 제도 운영 시 전문가 자문료가 발생할 수 있으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(150만원 내외로 추정)으로 비용추계 해당사항 없음

4. 작성자

- 감사관 직무대리 감사팀장 박호영